

변 경 대 비 표

■ 펀드명 : 하나 1Q 미국 S&P500 미국채혼합 50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채권혼합]

■ 효력발생일(예정) : 2026 년 10 월 16 일

■ 변경사유

-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 변경 (분기 → 매월 15 일)
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-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보완
- 이익금 초과분배에 따른 위험 기재

■ 신탁계약서 변경사항

구 분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제 31 조(이익분배)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<제 31 조(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) 제 5 항의 문구 위치 변경>	제 31 조(이익분배)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1.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제 4 호의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한다)은 제외한다.] 2.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3. 법 제 240 조 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4. 법 제 234 조에 따른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

			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 또는 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
제 31 조의 2(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)	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 변경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보완	제 31 조(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) ① 집합투자업자는 <u>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</u>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3 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,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. 1. 지급기준일 : <u>매 1,4,7,10 월의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(단,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)</u> 2. ~ 4. (생략) ② ~ ④ (생략)	제 31 조의 2(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) ① 집합투자업자는 <u>제 31 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수익 및 배당재원 등의 범위 내에서</u>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은 <u>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(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</u>을 초과할 수 있다.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3 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,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. 1. 지급기준일 : <u>매월 15 일. 다만,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</u>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		⑤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1.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<단서조항 신설> 2.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3. 법 제 240 조 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4. <신설>	<제 31 조(이익분배) 제 1 항으로 문구 위치 변경>
제 48 조(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)	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보완	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2. 제 31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. ~ 4. (생략)	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제 31 조 및 제 31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. ~ 4. (현행과 같음)
부칙			부 칙 1.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6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■ 간이투자설명서 변경사항

구 분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요약정보 - 주요투자위험	이익금 초과분배에 따른 위험 기재	(추가)	[이익금 초과분배에 따른 위험]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수익 및 배당재원 등의 범위 내에서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시장상황에 따라 분배재원이 감소하거나 운용전략 수행이

			어려운 경우, 이익금이 분배금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분배금 지급을 위해 투자원본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용될 수 있으며,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투자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익금 초과 분배 여부는 펀드 전체 기준으로 판단되며, 투자자의 투자시점이나 매입가격에 따라 실제 원금과 수익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투자자의 실제 원금과 수익금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. 또한, 투자자별로 매입시점의 기준가격이 분배 전 기준가격보다 높은 경우 이익금 초과 분배로 볼 수 있으며 이익금 초과 분배가 지속될 경우 실제 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
--	--	--	--

■ 투자설명서/일괄신고서 변경사항

구 분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투자자유 의사항			
투자자유 의사항	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보완 이익금 초과 분배에 따른 위험 기재	(추가)	13.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수익 및 배당재원 등의 범위 내에서 수익자에게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 분배금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한 기준으로 산출되며,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분배재원, 추적오차 등 운용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또한,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 운용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		(추가)	14.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수익 및 배당채권 등의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 있으며, 펀드 전체 손익과 무관하게 해당 채권 범위 내에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이익금을 초과하여 투자원금의 일부가 분배금 형태로 지급될 수 있으며, 분배금을 수령하더라도 투자신탁의 평가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이 원금에 미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익금 초과분배 여부는 펀드 전체 기준으로 판단되며, 투자자의 투자시점이나 매입가격에 따라 실제 원금과 수익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결산 시 연 1 회 분배하는 경우와 비교해 세제상 불리할 수 있으니, 이러한 점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요약정보			
주요투자위험	이익금 초과 분배에 따른 위험 기재	(추가)	[이익금 초과분배에 따른 위험]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수익 및 배당채권 등의 범위 내에서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시장상황에 따라 분배채권이 감소하거나 운용전략 수행이 어려운 경우, 이익금이 분배금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분배금 지급을 위해 투자원본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용될 수 있으며,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투자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익금 초과분배 여부는 펀드

			전체 기준으로 판단되며, 투자자의 투자시점이나 매입가격에 따라 실제 원금과 수익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투자자의 실제 원금과 수익금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. 또한, 투자자별로 매입시점의 기준가격이 분배 전 기준가격보다 높은 경우 이익금 초과 분배로 볼 수 있으며 이익금 초과 분배가 지속될 경우 실제 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10.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위 험	이익금 초과 분배에 따른 위험 기재	(추가)	[이익금 초과분배에 따른 위험]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수익 및 배당채원 등의 범위 내에서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시장상황에 따라 분배채원이 감소하거나 운용전략 수행이 어려운 경우, 이익금이 분배금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분배금 지급을 위해 투자원본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용될 수 있으며,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투자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익금 초과분배 여부는 펀드 전체 기준으로 판단되며, 투자자의 투자시점이나 매입가격에 따라 실제 원금과 수익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투자자의 실제 원금과 수익금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. 또한, 투자자별로 매입시점의 기준가격이 분배 전 기준가격보다 높은 경우 이익금 초과 분배로 볼 수 있으며 이익금 초과 분배가 지속될 경우 실제 원금이

			감소할 수 있습니다.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 한 사항	투자신탁분배 금 지급기준 일 변경 소득세법 개 정사항 반영 투자신탁분배 금 지급에 관 한 사항 보완	가. 이익배분 <기존 (5) 문구 위치 변경> 1)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(1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 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집합 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	가. 이익배분 1)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 배를 유보하며, 법 제 242 조에 따 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 ①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 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④의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한 다)은 제외한다.] ②법 제 240 조 제 1 항에 따른 회 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 의 매매이익 ③법 제 238 조에 따른 집합투자재 산의 평가이익 ④법 제 234 조에 따른 상장지수집 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 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 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 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 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2)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(1) 집합투자업자는 1)의 규정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수익 및 배당채권 등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투자

		급기준일로부터 3 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,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합니다. - 지급기준일 : 매 1,4,7,10 월의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. 다만,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- 지급시기 :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 - 대상 수익자 :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중인 수익자 - 분배금 :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(2) ~ (4) (생략) (5)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 - 법 제 240 조 제 1 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- 법 제 238 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- 법 제 234 조에 따른 상장지수집	신탁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(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.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3 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,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합니다. - 지급기준일 : 매월 15 일. 다만,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- 지급시기 :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 - 대상 수익자 :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중인 수익자 - 분배금 :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(2) ~ (4) (현행과 같음) <1>이익금의 지급으로 문구 위치 변경>
--	--	--	--

		<u>합투자기구로서 지수 구성종목 변경으로 교체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</u> <u><신설></u>	※ 투자신탁분배금 :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수익 및 배당 자원 등의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으로 현금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예정된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시기에 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 운용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※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예외의 경우 : 이 투자신탁의 보유현금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서 보유현금을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, 상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. ※ 이익금 초과분배에 관한 경우 : 이 투자신탁은 예정된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시기에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 - 보유 중인 자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평가손실, 매매에 따른 매매손실이 발생되어 당월에 발생한 이익금이 없거나 분배할 금액보다
--	--	---	--

			<u>작은 경우</u> - 보유자산 매매를 통하여 기대했던 매매이익이 실현되지 않아 당월에 발생한 이익금이 분배할 금액보다 작거나 없는 경우 - 일부 보유자산에서는 매매이익, 평가이익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전체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
--	--	--	--